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6호

제출연월일 2005. 9.28.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현행의 미약한 교육급여제도를 보충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 ⇒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 나. 장학기금의 사용용도에 수학여행경비, 교복 및 체육복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보조금을 추가함.(안 제5조)
- 다. 장학금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안 제11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중·고·대학교 재학생중
 - ⇒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성적우수한 학생
 - ⇒ 관외 소재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성적우수한 학생
 -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중인 성적우수한 학생

- 라. 장학보조금 지원대상 및 항목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위기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급항목 : 수학여행경비, 교복 및 체육복구입비 등 정규학습과 정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제경비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매년 기금운용부족액 77,400천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출연
 - 1) 장학금 부족액: 7,400천원
 - 2) 장학보조금 소요액 : 70,000천원(수학여행 35,000, 교복 35,000)
- 다. 합 의:기획담당관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5. 7. 21 ~ 2005. 8. 1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 지급과 이를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2. "장학금"이라 함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당한 반대 급부 없이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 3. "장학생"이라 함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말한다.
- 4. "장학보조금"이라 함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경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기타 학 생이 부담하는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 한다.
- 5. "장학금등"이라 함은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금등의

-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및 목표액)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목표 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한다.
 -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3. 기타 수입금
 - ②기금의 목표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다.
 -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다.
 -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③장학금등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

- 전까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
 -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결 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 ②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사천시 물품관리 조례」및「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 1.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 적이 우수한 학생

- 2. 시 관외에 소재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제1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13조(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과 일반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일반장학생"이라 한다)의 학교별 인원 및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 1. 읍·면·동장은 제11조에 해당하는 학생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중에서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 제15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퇴학·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 2.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 정지된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 제16조(장학보조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 1. 수급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2. 재난·재해·가정불화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시장이 장학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제17조(장학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항목) ①장학보조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한 교육급여외의 학습참여에 필요한 제경비 및 학습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②제1항의 장학보조금 지원 세부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장학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곤란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회복지사업법

-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 ~ ④ 생략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

- 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 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 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